

#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72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5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김원태, 김춘곤, 박강산,  
박승진, 송재혁, 아이수루,  
, 오금란, 유정희, 윤기섭,  
이상욱,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임종국 의원(14  
명)

## 1. 제안이유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고작 793건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급발진 사고로 인정 사례는 불과 1건으로,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차량 결함 증명을 통한 인정은 물론, 실질적인 입증조차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자 규정과, 급발진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구축, 그리고 기록장치 기록 데이터 기반의 급발진의 심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호)
- 나. 급발진의심사고 통계 구축 및 공개에 대한 조항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 다. 기록장치 시범·분석은 물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조항 신설함 (안 제7조제2항)
- 라.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 등 자문 및 예산 지원 조항 규정 (안 제9조)
- 마. 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조항 규정 (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해자”란 급발진의심사고로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발진의심사고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기록장치 시범·부착)”을 “(기록장치 시범·부착 및 데이터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3. (생 략)</p> <p>제4조(실태조사)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7조(기록장치 시범·부착)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 <p>제2조(정의) -----<br/>-----.</p> <p>1. 2. (현행과 같음)</p> <p>3. <u>“피해자”란 급발진의심사고로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4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발진의심사고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u></p> <p>제7조(기록장치 시범·부착 및 데이터 분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항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발진의심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u></p> |

<신 설>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

은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당지급 대상 및 범위(자문에 응한 전문가·법인·단체 등), 지급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